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84
----------	-------

발의연월일 : 2024. 5. 24.

발 의 자 : 장혜영 · 강은미 · 심상정
배진교 · 김예지 · 양경규
용혜인 · 윤미향 · 이재민
허숙정 · 강성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고용노동부는 시범적 관리감독을 통해 20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으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됨에 따라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

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두 부처 간 과세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며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과세정보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 기준의 확보 등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는 해당 과세정보를 필요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요청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또는 제102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2조의2(과세정보의 요청 등)</u> <u>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u> <u>기준의 확보 등 이 법에 따른</u> <u>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u> <u>한 경우 납세자의 사업소득 ·</u> <u>근로소득 등의 과세정보 제공</u> <u>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u> <u>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u> <u>동부장관은 해당 직무에 필요</u> <u>한 범위에 한하여 과세정보 제</u> <u>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과세정</u> <u>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u> <u>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u> <u>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u> <u>제공받거나 이용한 자는 해당</u> <u>과세정보를 필요한 목적 외의</u> <u>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u> <u>또는 기관에 제공 · 누설하여서</u> <u>는 아니 된다.</u> <u>③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u> <u>범위, 요청 절차 · 방법 및 그</u> <u>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u>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u>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u>으로 정한다.</u> 제109조(벌칙) ① ----- ----- ----- -----<u>제72조, 제76조</u> <u>의3제6항 또는 제102조의2제2항</u>----- ----- -----. ② (현행과 같음)
--	--